

# 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56
----------	-----

제출년월일 : 2005. 5. 9.

제 안 자 : 신교선의원외 2인

## 1. 제안의 이유

평창군 의정회를 설치함으로써 군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나. 평창군 의정회 구성 기준을 규정함 (안 제2조)
- 다. 평창군 의정회 사업을 규정함 (안 제3조)
- 라. 평창군 의정회 사업계획 등의 승인을 규정함(안 제4조)
- 마. 결산보고를 규정함(안 제5조)
- 바. 운영규정을 규정함(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 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방자치발전과 의정 및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평창군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의정회는 평창군의회 의원 전임 의원을 정회원으로, 현임 의원을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홍보
3. 사회복지 및 환경문제 연구
4. 군의정 기념사업
5. 지역 현안문제 연구 및 홍보
6. 국내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7.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의정회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원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의정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결산보고 등) 의정회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실적 보고서와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 익년도 3월까지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정회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關係法令 拔萃

第58條 (議案의 發議) ①地方議會에서 議決할 議案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나 在籍議員 5分の 1 이상 또는 議員 10人 이상의 連署로 發議한다.

<改正 1989.12.30>

②委員會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議案을 제출할 수 있다.

< 신설 1999.8.31 >

③第1項 및 第2項의 議案은 그 案을 갖추어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